



# 방송통신시장 사후 규제 논의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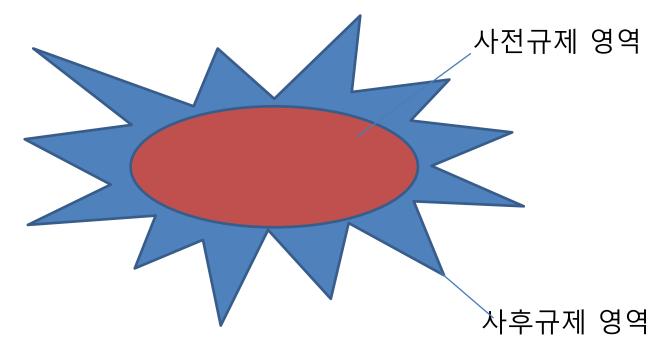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장) 2016.12.28.

## 방송법과 통신법의 사전규제 현황

- 사전규제의 내용
  - 공통: 보편적 서비스 규제, 이용약관 규제, 이용자 보호 규제
  - 통신법 고유: 네트워크 접속 규제, 회계분리 규제
  - 방송법 고유: 방송프로그램 편성 규제
- 사전규제의 특성과 한계
  - 사전규제는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포함한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행위 전에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 는 방식으로 설계됨
  - 경쟁과 이용자 이익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를 해치는 경향이 있는 사업자의 능력을 제한하고 유인체계에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 설계할 수 있음
  - 사전규제가 엄격하면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경쟁을 촉진하거나 이용자 후생을 증대할 가능성도 있는 행위까지 과다 억제할 위험
  - 사전규제가 느슨하면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만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되는 특정 사업자의 다른 행위나 사전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자의 행위는 규율 못하는 과소 억제의 위험

##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결합

- 상호보완적 역할
  - 사전규제(경쟁법 및 소비자법 집행의 기반 조성 위한 전문규제)
    - + 사후규제(경쟁법 및 소비자법 집행을 통한 전문규제 보완)
    - = 혼합적 규제
  - 사전규제가 타당한 영역과 사후규제가 타당한 영역의 구분



### 사전규제를 보완하는 사후규제의 역할

- 통신법상 네트워크 접속 규제의 사례
  - 사전규제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협정 체결 시 그 범위와
      조건 등이 상호접속 고시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제44조)
    - 협정 인가 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협정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의 인가를 요하고, 그 밖의 기간통신사업자는 협정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족하지만, 위와 같은 의무는 공통적으로 적용됨
    - 의무 위반 시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됨(동법 제 92조)
    - 미국 연방대법원의 Trinko 판결(2004년)은 Verizon이 AT&T를 포함한 경쟁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면서 상호접 속 관련 비차별의무를 규정한 1996년 통신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FCC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이 배경이 됨

### 사전규제를 보완하는 사후규제의 역할

- 통신법상 네트워크 접속 규제의 사례
  - 사후규제
    - 사전규제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사후규제 규정에도 위반할 수 있는가?
    - 미국 연방대법원의 Trinko 판결(2004년)은 FCC의 사전규제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미국 반독점법인 셔먼법에도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된 사건이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쟁제한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이른바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의 적용 부정)
    - 사전규제 규정의 제한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전규제 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경쟁과 이용자 보호의 목적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한 행위의 경우(특히 상호접속 고시에 규정이 불충분한 인터넷망 상호접속 관련 행위의 경우) 인터넷망 사후규제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미국 연방대법원의 Trinko 법리를 따르면 경쟁법에 의한 사후규제에
      는 사실상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사전규제를 보완하는 사후규제의 역할

- 통신법상 네트워크 접속 규제의 사례
  - 사후규제
    -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의한 사후규제가 가능한가?
    - 상호접속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당 부과 행위(전기 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중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당 부과 행위(동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 시 행령 개정안 [별표 4] 5. 사. 4))
    - 통신법상 공정경쟁 저해성과 이용자이익 저해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만일 구별할 수 있다면 공정거래법의 규제 공백을 메우는 역할(gap-filler)을 할 수 있는가?